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송기록 공개의 확대〉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483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4
3. 관계기관 의견	7

I .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광희의원 등 16인
2. 발 의 일 : 2025. 7. 15.
3. 회 부 일 : 2025.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일반인의 열람은 보장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2조 및 제162조의2).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하여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영업정보·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송기록 공개의 범위, 절차 및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162조의2 신설),

법원은 소송기록의 열람 신청을 허가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처리¹⁾를 포함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비식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비식명조치를 완료하여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 신청 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열람하게 하도록 하며, 위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2조).

현행	개정안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 ② (생략)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 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④ ~ ⑥ (생략)

<신 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신청을 허가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처리를 포함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비식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제3항에 따른 비실명조치를 완료하
여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62조의2(소송기록의 공개 원칙 및 제한) ① 재판의 결과와 그 과정에 관한 기록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해당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③ 소송기록 공개의 범위, 절차 및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 「민사소송법」 제162조²⁾는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하 “소송관계인”이라 함)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법원사무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소송관계인이 아닌 자는 당해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다만, 소송기록 열람 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판결서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³⁾는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개정안은 판결서뿐 아니라 소송기록 전반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소송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공익적 목적 등이 있고 소송기록에 대한 비실명조치를 완료하여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은 때에도 확정된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대한민국헌법」 제21조⁴⁾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표

3)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4)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음.⁵⁾

이러한 알 권리의 자유권적 성질에 근거하여 소송관계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공익적 목적 등을 갖추면 소송기록의 내용에 대한 정보수집권,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하고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의 심사 시 다음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정보와 소송기록 전체를 조합하면 소송관계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 소송기록 공개에 따른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인격권 등이

5) [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결정]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을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19조도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침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둘째, 신설되는 안 제162조의2는 소송기록의 공개 원칙 및 제한에 대한 일반규정인데, 소송기록의 공개 범위와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62조 및 제163조6)에 이미 규율되어 있으므로, 안 제162조의2 일반규정의 실효성 및 다른 규정과의 체계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3.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소송관계인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도 공익적 목적 등을 가진 제3자가 확정된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의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고, 비식별 처리 과정에서 사법자원이 과도하게 소모될 우려가 있으며, 법규정

- 6)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을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 ④~⑥ (생략)

간 체계적 정합성 문제가 있고, 소송기록 공개 논의는 판결서 공개 확대 정책에 대한 평가 이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검토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1